



: 2020-0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 결

사 건 2018가단5183074(본소) 계약금 청구의 소  
2019가단5009999(반소) 손해배상 등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sup>1)</sup>  
담당변호사 송준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성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권상경

변 론 종 결 2019. 11. 14.

판 결 선 고 2020. 2. 13.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 30. 사임하였다.



: 2020-03-25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경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교사임용시험 대비 학원인 D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9. 11. 30.까지, 계약금을 3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으로 정한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서

#### 제1조(목적)

피고는 원고의 강의를 제작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실강, 인강, 자료 등과 기타 상업적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와 원고는 상호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강의과목 및 과정)

원고가 담당하는 과목은 '전공유아'로 한다.

### 제4조(계약기간 및 사항)

① 양자 계약은 2019. 11. 30.까지 계약으로 하며,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② 양자 간 계약금액은 300,000,000원으로 한다(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③ 양자 간 계약금 지급방법은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30%를 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강좌개강 1달 전에 전액을 지급한다.

(단, 특약사항으로 양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③의 특약사항은 본 ③계약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효력은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 제5조(강사료 지급방법)

① 피고는 유료강의(직강)에서 발생한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등을 제외)을 수익배분 기준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다.

※ 배분비율 40% : 60% (피고 : 원고)

② 피고는 유료강의(인강)에서 발생한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등을 제외)을 수익배분 기준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다(단, 3년차 시기부터는 피고 : 원고의 배분비율을 40% : 60%로 한다. 3년 후 재계약 시 이 조건을 유지한다). 단,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을 넘었을 때 적용한다.

※ 배분비율 50% : 50% (피고 : 원고)

③ 전 항의 콘텐츠를 B2B를 통하여 서비스 하는 경우 B2B에 제공된 통합 콘텐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양자가 합의하여 지급한다(단, 3년차 시기부터는 피고 : 원고의 배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3년 후 재계약 시 이 조건을 유지한다).

※ 배분비율 50% : 50% (피고 : 원고)

### 제6조(전속 및 책임)

① 직강 및 인강의 경우 원고는 피고 학원의 전임, 전속으로 한다.

② 양자는 계약 기간 내 업무상 알게 된 계약 정보 및 계약 조건에 대하여 2년간 타인(특히 양자의 동종 업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양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양자는 계약기간 내에 피고가 개설하는 강좌와 이와 유사한 강좌(관행상 동종 학원에서 진행하는 강좌)를 개설·이용하거나 연계된 강좌개설, 교습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양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① 양자는 질병(신체적 문제) 및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⑥ 양자는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원고의 전년도 강좌 수입금 총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의 총 수입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할 때는 1억 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및 특약)**

④ 다음 사항을 특약으로 한다(특약사항은 본 계약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때, 매년 100,000,000원씩 3회에 걸쳐 1월 10일 지급하도록 한다(단, 부가가치세 별도).

다. 피고는 2017. 1. 6. 원고에게 계약금 1차분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 해지통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이 도박에 빠져 수억 원의 채무를 짐으로써 피고 학원의 2관과 3관 시설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등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졌으므로, 이는 강의계약 제9조 제1항의 '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한다.

② 강의계약 제1조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학원을 운영하고, 피고와 강사 상호간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나, E은 경영권을 비롯하여, 학원의 제반시설 및 강사와의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강의계약 제9조의 '강의계약의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③ E은 제3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강의계약의 정보와 조건을 누설하였으므로, 이는 강의계약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



④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 원고와 피고의 공동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알리지 않는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

마. 피고는 2018. 3. 15. 원고의 대표이사인 F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7068호로, 원고는 피고 학원과 동종의 학원인 G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효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학원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6항이 규정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9. 19. "피고 학원의 영업종료 및 H 등으로의 양도가 진행됨으로써 이미 이 사건 계약 제9조에서 정한 '피고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피고와 원고(원고의 대표이사 F)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F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소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강의활동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 자체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3억 원 전



체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3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4항 제4호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계약금의 지급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중 미지급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F가 피고 학원에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전속하여 강의를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F는 피고 학원에서 약 10개월만 강의하였고 2017. 10. 31. 피고에게 부적법한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후부터 피고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나. 관련법리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4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의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강의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강의 약속에 대한 대가 및 강의로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될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미지급된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계약금이 약 3년의 전속강의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도 없다.

나) 원고가 실제로 강의를 함에 따른 강사료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강사료는 이 사건 계약금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원고의 강의과목분야에서 수강생의 수가 업계 1위 또는 이에 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강사들 중에서도 제일 많은 강사료를 정산받았으며, 2017년에 원고



로 인하여 피고가 정산받은 금액은 676,396,297원[= 인강 638,444,995원 + 직강 37,951,302원(= 56,926,953 × 40%/60%)]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직을 제안하면서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전속강의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안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6.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미지급 계약금의 지급기일은 각 2018. 1. 10., 2019. 1. 10.인데, 위 1의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2017. 10. 31. 무렵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피고의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지급채무는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적법함에도 원고는 2017. 10. 31. 이후 이 사건 계약 제6조





: 2020-03-25

제1, 3항을 위반하여 G학원과 새로이 전속강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6항에 따라 약 1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년도 강좌수입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이 사건 해지통보가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 3항이 규정한 책임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